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7. 12. 13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11월 13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

제5차 행정위원회(2017. 12. 5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재정국장 서종석)

가. 제안이유

○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」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우리 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부칙의 유효기간 연장 (2017년 12월 31일 → 2020년 12월 31일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목)

○ 이 개정 조례안은 구세 감면조례의 일몰규정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구세 경감을 지원하고자 부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,

○ 주요내용으로는

- 부칙 안 제3조(적용시한)에서 이 조례가 2017. 12. 31.자로 종료됨에 따라 일몰규정상의 기한을 3년 연장하여 감면규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, 구세 경감을 통하여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, 상위법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기간의 연장 관련 규정에 의거,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함으로써 통일적인 조세정책의 필요성과 타 자치단체와의 공통적인 적용을 위해 감면 규정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98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11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」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우리 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부칙의 유효기간 연장 (2017년12월31일 → 2020년12월31일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 : 신설、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、성별영향분석평가、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(2017.10.26. ~ 11.6. / 11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116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부칙 제3조 중 “2017년 12월 31일”을 “202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조례 제116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(적용시한) 이 조례는 각 조문 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<u>2017년 12월 31일까지</u> 그 효력을 가진다.	조례 제116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(적용시한) ----- ----- ----- <u>2020년 12월 31일</u> -----.